

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3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 : 2007.11.16

제출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기존 현수막 게시방식을 탈피하고, 21세기 과학발전에 걸맞는 전자게시대(판) 설치로 급증하는 광고수요를 충족시키고 광고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제10조(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) 제1항제5호에 전자게시대(판) 신설(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)
- 나. 제20조(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 제1항제2호에 “옥상”자구 삽입 ‘05년 조례 전부 개정시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했으나, 표준안에 “옥상”자구 누락(안 제20조제1항제2호)
- 다. 전자게시대(판)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에 위탁·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(안 제27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 관리법」 제6조 등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7. 9. 18 ~ 10. 9(21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전자게시대(판)

제20조제1항제2호 중 “광고물등의 표시 허가·신고”를 “옥상광고물의 표시허가”로 한다.

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2(전자게시대(판)의 위탁관리)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의한 전자게시대(판)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·단체 등에게 전자게시대(판)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)</p> <p>① 영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의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휴지통 2. 벤치 3.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4. 지하철역 안내표지판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 <p>②~③ (생략)</p>	<p>제10조(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 방법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2. --- 3. ----- 4. ----- <p>5. 전자게시대(판)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0조(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 ①</p> <p>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높이 4미터 이상인 <u>광고물등의 표시 허가·신고에 관한 사항</u> 3. ~ 5. (생략) <p>② ~ ④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제20조(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 ①</p> <p>----- 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옥상광고물등의 표시허가</u> ----- 3.~5. (현행과 같음) <p>②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27조의2(전자게시대(판)의 위탁관리)</u>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제5호에 의한 전자게시대(판)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·단체 등에게 전자게시대(판)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.</p>